

#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 : 2004. 1.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4. 1. 8.
- 다. 의안번호 : 제 2004 - 3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1. 14.(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안이유

- 2003. 10. 1일 거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위생담당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3년 9월 26일 공포시행된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조례의 내용도 개정해야 하나 빠트린 경우임.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3년 9월 26일 공포시행된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도 개정해야 하나 빠트린 경우임.
-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변경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도 보건소장으로 당연히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